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등)

- ① 셋별재활주간보호센터와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과 기능유지, 기능회복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」을 체결한다.
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」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하며, 온라인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.
 1.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등급
 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3.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
 4.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
 5. 응급연락망 및 보호자 정보
- ⑤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케어포 및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변경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다.
- ③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재계약 및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, 본인부담금 변경 등의 사항은 케어포 공지, 문자, 단톡방,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타 이용자의 안전 및 공동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
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경우
 4.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
 5.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
 6. 기타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)

- ① 보호자는 이용자가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
- ② 보호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, 기능회복훈련, 식사, 생활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보호자는 이용자의 생활공간, 프로그램 운영,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④ 보호자는 케어포 기록, 상태변화 안내, 보호자밴드, 단톡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다.
- ⑤ 보호자는 라파엘브릿지153 운동, 기능회복훈련, 딩다댄스 등 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- ① 보호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등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보호자는 연락처 및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보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.
- ⑤ 보호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